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0일,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1. 20.)

제2차 전체회의(2026.2.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표의원)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기속력을 무력화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와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취지에 반하는 것임.

이에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69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제외되어 있으나,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권 구제의 공백 방지 및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침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체계의 비효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